

위험등급 6.1은 급성 독성 물질을 의미하며

위험등급 8은 부식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 법적 규제현황 항목

유해한 화학물질을 각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규제내용을 알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화학물질 규제내용

금지물질의 경우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말하고, 허가 대상 유해물질은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법에서 정하는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을 말하고,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는 정해진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물질을 말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을 말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취급근로자의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밖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과 위험물질,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대한 규제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규제내용

금지물질은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는 물질을 말하고, 허가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제한 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을 말하고,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하며,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